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! 환경관리 Q&A

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
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·문의·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
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Q

폐수배출, 공동방지사설의 처리 가능?

폐수배출시설 총량제 지역으로서 폐수배출량이 한 사업장에서 50톤/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당사업장에서, 즉 동일한 대표, 동일한 번지내에서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을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50톤/일 용량으로 폐수를 배출해서 100톤/일의 용량으로 공동방지사설을 하려고 합니다. 위와 같이 동일한 번지내에서 동일한 대표자가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50톤/일씩 폐수를 배출하여 100톤/일의 처리 용량으로 공동방지사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?

A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방지사설을 공동방지사설로 신고하면, 공동방지사설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. 단,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Q

공중화장실의 절수기 설치?

2013. 5. 15 이내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한 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. 현재 설치

운영중인 변기와 세면대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처럼 밸브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나요?

A

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중 기 설치중인 시설은 같은 법 부칙 제2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(2013. 5. 15)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기 설치된 변기 및 수도꼭지의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가운데 절수기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수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Q

환경기술인 중복 선임 및 자가측정 횟수는?

환경기술인 중복 선임관련 문의입니다. 1명이 대기 환경기사 1급 및 수질 환경기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시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자격보유 1명이 대기 및 수질 환경기술인으로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?(대기 특1종 및 수질 특1종 사업장임) 또한 특정물질 중 에틸벤젠이 특정물질로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의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에틸벤젠은 허용기준이

없습니다. 이런 경우 자가측정을 해야 하나요? 기존에 4종(1회/6개월)으로 측정하고 있는 물질(먼지)에 대한 측정 주기(동일 배출구)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[별표 10] 비고 5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[별표 11]에 따라 자가측정은 배출구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, 4종 배출구(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)의 경우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, 동일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물질(특정대기유해물질)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합니다.

Q 가동개시 변경신고 가능여부는?

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개시 신고를 시 당국에 제출하여 시운전 기간을 부여 받아 운전 중 시료 분석한 결과 허가 신청시 예측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. 이에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기간에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로 제출하여도 가능한지요? 가동개시 변경신고가 안될 경우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하여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재부여 받을 수 있는지? 아니면 시운전 기간 중이므로 기존의 시운전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?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나 배출허용기준 기준내 경우는 가동개시 신고하지 않고, 변경신고만 가능한지 아니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시운전 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지?

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후단의 가동개시일 변경 조항은

가동개시 이전 시점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, 이미 가동개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동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새로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될 경우에 배출시설을 변경하고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기간을 재부여 받아야 합니다.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지만,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가동개시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.

Q 특정유해물질로 인한 협의변경은?

현재 공사 종료 후 운영시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해 검사를 하였는데 수질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환경보전 방안을 수행해야 하는지요?

A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과 무관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(최초) 또는 재협의시 포함된 공정이나 공법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새로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,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0%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 및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.

